

소 장

원고(선정당사자) 0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301호

담당변호사 정병민

전화 : 02-6925-6004, 팩스 : 02-6925-0701

피고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대표자 위원장 김인관

손해배상 등

청 구 취 지

- 피고 케이티 노동조합의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2025. 3. 27. 규약 제21조 제4호를 개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청구의 요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케이티 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케이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대표자는 위원장 김인관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만 합니다)은 피고 조합 40개의 신규 지부(토탈영업센터 28개 지부, 본사 내 12개 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피고 조합의 조치로 인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침해받은 자입니다.

나.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첫째, 피고 조합의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025. 3. 27. 규약 제21조 제4호 ‘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이하 편의상 ‘이 사건 규약’이라 합니다), 피고 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한 근거를 삭제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025. 3. 27.자 규약 개정안 ;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결의’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2조(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선행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 것으로서 위법 · 무효이고,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그 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둘째, 피고 조합은 현 집행부에 대해 비우호적인 40개 신설 지부에 대해서만 2025년 2월에 개최되는 정기 지부 대회에서 지부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갑 제2호증의 2 피고 조합 내부 문건), 당해 연도 정기 대의원대회에 신설 지부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파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갑 제3호증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48조). 그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자행한 2024. 10. 17.자 노사 합의로 인해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로 강제 전보를 당한 것에 모자라, 피고 조합의 편법적 조치로 인하여 자신들을 대표할 지부 대의원에 대한 선출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였고, 노조 규약 개정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 조합은 규약이 보장한 원고들의 당해 연도 지부 대의원 선출권을 완전히 박탈하였고,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2조가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조합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조합 전국대의원 대회가 2025. 3. 27. 노조 규약 제21조 제4호를 개정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고, 피고 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 조합의 전국대의원대회는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갑 제3호증 규약 제22조),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제외한 피고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갑 제3호증 규약 제23조).

나. 피고 조합의 전국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고, 선출 인원은 지부별 조합원이 200인 이하일 경우에는 지부별로 1명씩 선출하고, 지부별 조합원이 200인 초과일 경우에는 200인 단위로 1인씩 선출하되 단수 101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 선출합니다. 전국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중 그 소속(지부)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국대의원 자격이 상실됩니다(갑 제3호증 규약 제24. 26조). 피고 조합지방조직운영 규정 제4절 대의원 배정 및 선출에 따르면, 피고 조합 지부별 대의원의 배정은 규약 제24조에 따르고, 각 지부 대의원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하는 정기 지부 대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만일 피고 조합 지부가 정기 지부 대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연도 정기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갑 제3호증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48조).

갑 제3호증 지방조직운영 규정 일부 발췌

제4절 대의원 배정 및 선출

제47조 【배정기준】 지부별 대의원의 배정은 규약 24조에 따라 배정한다.

제48조 【선출】

- ① 대의원은 규약 제24조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② 대의원은 지부대회 개최시 선출하며 선출일정은 지방조직운영규정 33조 ②항에 의한다.
- ③ 지방조직운영규정 33조 ②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정기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없다.

제49조 【일정 등】 대의원 선출 등 기타 세부사항은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와 피고 조합은 2024. 10. 17. 사측의 구조조정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노사합의서, 갑 제4호증의 2 법인 신설 및 직원 전출안 ; 이하 ‘이 사건 노사 합의’라 합니다). 피고 조합은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그동안 반대했던 사측의 구조조정에 동의하기로 서명하였습니다.

케이티와 피고 조합 사이의 2024. 10. 17. 이 사건 노사 합의 이후 구조조정을 거부한 약 2,500 명의 조합원들은 신설된 현장 토탈영업센터로 전환 배치되었고(갑 제4호증의 1 노사합의서, 갑 제4호증의 2 법인 신설 및 직원 전출안, 갑 제4호증의 3 2024.10.11.자 KT 노조 성명서), 케이티는 이 사건 노사 합의를 앞세워 기존 부서를 폐지하고, 직원들에게 신설 법인 전출을 압박하였습니다. 신설 법인 전출 거부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은 현장 토탈영업센터로 강제로 전보되어 종전 업무와 무관한 영업 업무를 맡아야 했습니다(갑 제4호증의 2 법인 신설 및 직원 전출안).

갑 제4호증의 2 법인 신설 및 직원 전출안 5쪽 일부 발췌

※ 전출 · 특별희망퇴직 미신청/미선발 직원 재배치(안)

- Total영업(Mass+B2B), VOC 대응, 신규고객 발굴 업무 수행하는 新 직무 생성
- 광역본부 직속으로 배치 후, 희망근무지 등을 고려 파견발령
- 개인별 계량 목표부여 및 성과관리 시행
- 직무전환교육 시행 (8주)

이 사건 노사 합의 이후 전국에 신설된 토탈영업센터에는 피고 조합의 28개 지부가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약 1,500명의 조합원이 케이티의 조직개편으로 케이티 본사로 배치되었고, 케이티 본사 내에는 피고 조합의 12개 지부가 신설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2025년 대의원 미선출 40개 지부 현황).

라. 피고 조합은 위 노사 합의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보궐/신설지부 지부장 선거 일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희망퇴직 및 전적 전출로 인하여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나(갑 제3호증 선거관리규정 제6조 및 제39조 제2항), 피고 조합은 2024. 12. 23. 조직개편 이후 신설지부의 지부장 및 대의원 선출 등 여러 선거를 치러야 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25년 2월 중 정기 지부 대회에서 보궐지부 지부장 선출, 신설 지부장 선출, 대의원 선출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지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2024. 12. 23.자 조합소식, 갑 제6호증의 2 2024. 12. 23.자 조합 소식지).

갑 제6호증의 1 2024. 12. 23.자 조합소식 2쪽 일부 발췌

▲보궐/신설지부 지부장 선거일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희망퇴직 및 전적전출로 인해 보궐지부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나, 조직개편 후 신설지부에 대한 지부장과 대의원 선출 등 여러 번 선거를 치러야 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각종 선거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2025년도 정기 지부대회에서 보궐지부 지부장선출, 신설지부 지부장선출, 대의원선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마. 그러나, 피고 조합은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노사 합의 체결로 인해 새롭게 지부가 만들어져, 현 피고 조합 집행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40개의

하부 단위 신설 지부(토탈영업센터 28개+본사 12개)의 대의원 선출을 하지 않기로 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으며,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2025. 2. 3. 09:15 이전에 작성된 피고 조합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40개 신규 지부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과 달리 지부장만 선출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112개 (=46+10+56) 지부에 한하여 지부장 선거일인 2025. 2. 11. 지부장과 지부 대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2 피고 조합 내부 문건).

갑 제2호증의 2 피고 조합 내부 문건 일부 발췌

일자	구분	기관	공고문
	대의원만 선출 (46)	46개	1. 지부대회 공고문(지부장) 2. 대의원 입후보등록 공고문(지부선관위) 3. 대의원정수
	지부장만 선출 (40)	40개 신규 지부 * 토탈28개/본사12개	1. 선거일 공고문(중앙위원장) 2. 지부조합원 총회공고문(지부 결성준비위원회 대표위원) 3. 지부장 입후보등록 공고문(지부 결성준비위원회 대표위원)
	통합지부장+대의원 (10)	10개 지부 * 강남/송파, 구로/강서, 동부산/남부산, 천남/천북, 본사6	1. 지부대회 공고문(통합준비위 대표위원) 2. 대의원 입후보등록 공고문(통합준비위 대표위원) 3. 선거일 공고문(중앙위원장) 4. 지부조합원 총회공고문(통합준비위 대표위원) 5. 지부장 입후보등록 공고문(통합준비위 대표위원) 6. 대의원정수
	보궐지부장+대의원 (56)	56개 지부 * 강북14, 강남5, 서부6, 부산7, 대구7, 호남6, 충청10, 본사1	1. 지부대회 공고문(지부장 직무대행) 2. 대의원 입후보등록 공고문(지부선관위) 3. 지부장 입후보등록 공고문(지부선관위) 4. 대의원정수

피고 조합은 2025. 2. 3.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지부장’ 선거일을 정하여 같은 달 11일로 공고하였고(갑 제7호증의 1 2025년 지부장 선거일 공고), 매년 1월경

피고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던 당해 연도 「정기 지부 대회 지침」을 각 지부에 공개적으로 하달하지 않은 채(갑 제7호증의 2 2024년도 정기 지부 대회 지침), 지부 대의원 선출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5. 2. 11. 전국적으로 정기 지부 대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신설(40개), 통합(10개), 보궐(56개) 지부장을 선출하였으나, 그 중 신설 지부에 대해서만 대의원 선출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바. 피고 조합 신설 지부는 2025. 2. 11. 이전에는 2025년 2월 중 정기 지부 대회에 지부장과 대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기로 한 피고 조합의 결정으로 인해 지부장을 선출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지부장이 지부 차원에서 정기 지부 대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기로 한다는 회의를 부의할 수 없었습니다(갑 제3호증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33조 제2항).

피고 조합 신설 지부는 2025. 2. 11. 비로소 자신들을 대표하는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었으나, 노조 규약에 따르면 각 지부 대의원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하는 정기 지부 대회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별도로 임시 지부 대회를 개최하더라도 당해 연도 정기 대의원대회에 신설 지부의 대의원을 파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48조).

사. 피고 조합은 위와 편법적 조치로 인해 피고 신설 지부 조합원들의 지부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였음에도, 2025. 2. 11. 2025년도 「정기」 지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방본부위원장 1명 및 지부장 101명, 전국 대의원 113명 선출을 완료했다고 공지했고, 원고들과 같은 신설 지부 조합원들은 위 공지를 통해 뒤늦게 자신들의 지부만 대의원 선출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2025.

2. 11.자 조합 소식). 그 결과 피고 조합의 전국 152개 지부 중 40개 지부(약 26%), 전

체 조합원 10,955명 중 4,000여 명(40%)의 조합원들이 단 1명의 전국 대의원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갑 제5호증 2025년 대의원 미선출 40개 지부 현황).

아.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2025. 3. 19. 2025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신설 지부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5. 3. 27.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강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5. 3. 27. 전국대의원대회에서 ① 2024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② 2025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③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중앙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⑤ 중앙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로 정했습니다(갑 제9호증 2025년 전국대의원대회 추진계획).

갑 제2호증의 1 2025. 3. 27.자 규약 개정안 일부 발췌

규약 개정(안)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제21조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	<p>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위원장 신임에 관한 사항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에 관한 사항	<p>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위원장 신임에 관한 사항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에 관한 사항

피고 조합의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2025. 3. 27. 규약 제21조 제4호 ‘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피고 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한 근거를 삭제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025. 3. 27.자 규약 개정안).

그로 인해 원고들과 같은 피고 조합 신설 지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노사 합의에 의해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로 강제 전보를 당한 것에 더하여, 피고 조합의 편법적 조치로 인하여 자신들을 대표할 지부 대의원에 대한 선출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이 사건 노사 합의와 관련한 노조 규약 개정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자. 이에 원고들은 피고 조합 전국대의원 대회가 2025. 3. 27. 노조 규약 제21조 제4호를 개정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 결의의 위법·무효 사유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입니다(갑 제10호증의 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3쪽 참조).

2)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 단체'로서 내부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법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참조). 그러나 그러한 자치적 법규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법의 규정은 효력상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확정 선행 판결의 존재

1) 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박철우 외 225명의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2014. 4. 8.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노사 합의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 조합 및 당시 위원장인 소외 정윤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3심까지 거쳐 원고별 각 20~3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고들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각 판결 참조).

2) 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강석영 외 58명의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피고 조합의 대의원을 지부별로 1명씩만 선출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결의는 지부별로 대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 문제(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3심까지 거쳐 위 결의는 피고 조합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였고 조합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결의는 위법·무효라고 인정한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1호증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2033477 판결¹⁾ 참조).

다. 이 사건 결의의 중대한 하자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규약 개정에 관하여 ‘현행 노조법과 정열(렬)’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으나(갑 제2호증의 1 2025. 3. 27.자 규약 개정안), 피고 조합 위원장이 단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로써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규약 제21조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업무 등

1) 위 2심 판결은 2017. 7. 27.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에 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었습니다(갑 제10호증의 2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2026878 판결 10~11쪽 참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결의를 통해, 이 사건 규약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 대상으로 보는 법적 근거를 삭제시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업무 등에 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합원들이 조합 내부의 의사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조합민주주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각 판결 참조).

2) 나아가 후항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 대의원 및 전국대의원대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 조합원의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고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총의(總意)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갑 제11호증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2033477 판결 5~11쪽 참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피고 조합의 편법적 조치로 인하여 전국 152개 지부 중 약 26%에 해당하는 신설 지부와, 전체 조합원 10,955명 중 4,000여 명 (40%)에 달하는 신설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자신들을 대표할 지부 대의원을 선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갑 제5호증 2025년 대의원 미선출 40개 지부 현황).

이렇듯 이 사건 결의는 원고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훼손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이 과정에서 대의원 구성이나 조합 의사결정 구조는 현저히 왜곡되어 조합원의 총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피고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중대한 하자로서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위법·무효입니다(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라. 소결

요컨대, 이 사건 결의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확정 선행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임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송은 이와 같은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4.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민법 제750조)

노동조합법 제11조 제6호, 제14호는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7조와 이 사건 규약 제21조 제6호,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 절차 등에 관한 규약의 제정과 개정'을 노동조합의 자율에 맡기

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의 보장'과 함께 '민주적 운영의 보장'을 병렬적으로 열거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의나 활동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나아가 노동조합이 '자주적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조합민주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한다든지 노동조합 내 소수자의 조합문제(운영)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총회를 제외한 피고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갑 제3호증 규약 제24조 제1항), 전국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됩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 조합의 전국 152개 지부 중 40개 신설 지부(약 26%) 및 전체 조합원 10,955명 중 4,000여 명(40%)의 신설 지부 조합원들이 단 1명의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했음에도, 2025. 3. 27.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강행함으로써 규약이 보장한 원고들의 당해 연도 지부 대의원 선출권을 명백히 침해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48조).

② 노동조합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노동조합법 제22조).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똑같이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임에도, 피고 조합 집행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신설 지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편법적으로 지부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22조에서 정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이는 조합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갑

제11호증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2033477 판결 5~11쪽 참조).

③ 관련 확정 선행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피고 조합은 관련 선행 확정 판결을 통해, △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합의하여 조합원들이 조합 내부의 의사 형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경우 위법하다는 점(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각 판결 참조), △ 피고 조합 조합원의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핵심적인 권리로서, 대의원 구성이나 조합 의사결정 구조는 조합원의 총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를 전제로 하는 점(갑 제11호증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2033477 판결 5~11쪽 참조)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관련 확정 선행 판결 취지조차 정면으로 위반하며 조합원의 권리를 재차 침해했다는 측면에서 피고 조합의 행위는 지극히 악의적이고,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명백합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²⁾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노사 합의부터 이 사건 결의에 이르는 앞서 본 사정들, △ 그로 인해 신설

2) 참고로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참조).

지부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이 입었던 근로조건 후퇴 및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 피고 조합의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 관련 확정 선행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피고 조합이 이 사건에서 보였던 악의적인 태도, △ 피고 조합의 절차 위반의 중대성, △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그동안 지출한 조합비 금액 및 피고 조합의 조치로 인해 입었던 구체적인 재산적 손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보면,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심히 막대하나,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할 위자료는 각 500,000원로 일용 정하여 청구합니다(명시적 일부 청구).

5. 결 어

가. 이상과 같이, 피고 조합의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2025. 3. 27. 규약 제21조 제4호를 개정한 이 사건 결의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확정 선행 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며 무효입니다.

나. 피고 조합은 규약이 보장한 원고들의 당해 연도 지부 대의원 선출권을 명백히 침해하였고,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2조가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으며, 조합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가 명확히 발생한 피고 조합의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일인 2025. 3.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2025. 3. 27.자 규약 개정안
1. 갑 제2호증의 2 피고 조합 내부 문건
1. 갑 제3호증 2024년 KT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집
1. 갑 제4호증의 1 노사합의서
1. 갑 제4호증의 2 법인 신설 및 직원 전출안
1. 갑 제4호증의 3 2024.10.11.자 KT 노조 성명서
1. 갑 제5호증 2025년 대의원 미선출 40개 지부 현황
1. 갑 제6호증의 1 2024. 12. 23.자 조합소식
1. 갑 제6호증의 2 2024. 12. 23.자 조합소식지
1. 갑 제7호증의 1 2025년 지부장 선거일 공고
1. 갑 제7호증의 2 2024년도 정기 지부대회 지침
1. 갑 제8호증 2025. 2. 11.자 조합 소식
1. 갑 제9호증 2025년 전국대의원대회 추진계획
1. 갑 제10호증의 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1. 갑 제10호증의 2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2026878 판결
1. 갑 제10호증의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35452 판결
1. 갑 제11호증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2033477 판결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부

2025. 10. 1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정 병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